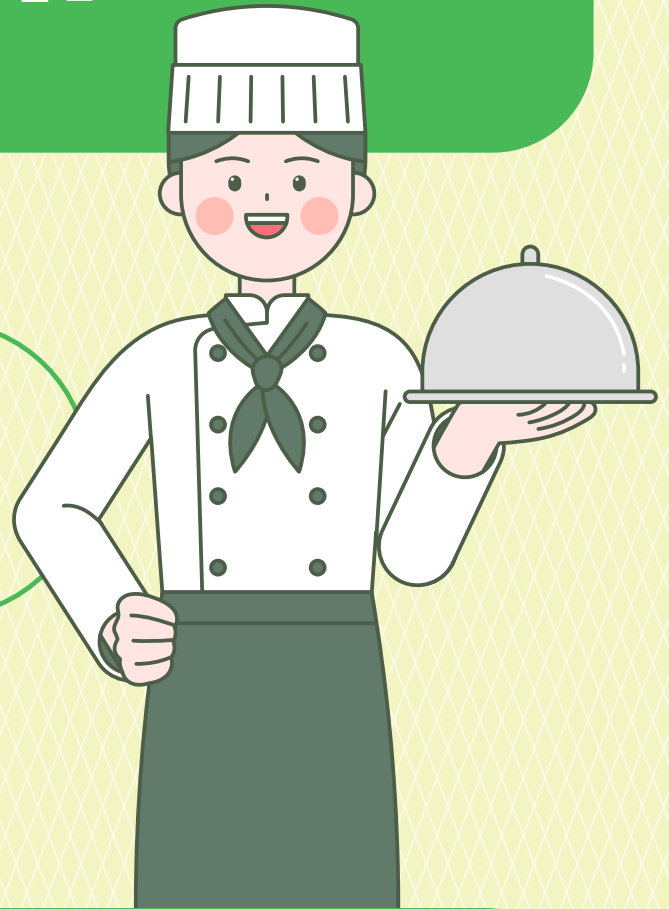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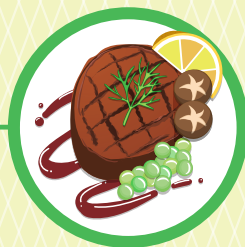


농식품 부정유통신고  
1588-8112

정부혁신  
보다 나은 정부

# 음식점 원산지 표시 이렇게 합니다!



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

“슬기로운 농업·농촌 생활을 위한 공익직불제, 1644-8778(내선 2번)로 문의주세요”

# 1

## 공통사항

###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업소

일반음식점, 휴게음식점, 집단급식소, 위탁급식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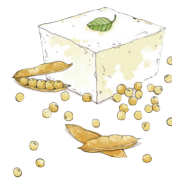
- **관련법령** 「식품위생법」 제2조제12호와 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 제21조제8호



### 음식점 농산물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

**9품목** 쇠고기, 돼지고기, 닭고기, 오리고기, 양고기, 염소(유산양 포함)고기, 배추김치(원료 중 배추와 고춧가루), 쌀(밥, 죽, 누룽지), 콩(두부류, 콩국수, 콩비지)

- **수산물** 넙치, 조피볼락, 참돔, 미꾸라지, 뱀장어, 낙지, 명태(황태, 북어 등 건조한 것 제외), 고등어, 갈치, 오징어, 꽃게, 참조기, 다랑어, 아귀, 주꾸미, 조리를 위해 보관·진열하는 살아있는 수산물



### 냉장고 등에 보관 중인 식재료의 원산지 표시방법

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농산물과 그 가공품을 보관·진열하는 경우 제품 포장재에 표시하거나 냉장고 등 보관 장소 또는 보관 용기별 앞면에 일괄하여 표시

- 다만, 거래명세서 등을 통해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관 장소 등의 원산지 표시를 생략할 수 있음
- **거래명세서 등의 범위** 공급(납품)자가 발행한 원산지가 기재된 거래명세서, 영수증(간이 포함), 원산지 증명서, 도축증명서, 등급판정서, 현재 보관 중인 식재료의 포장재 표시사항



### 음식점에서 보관해야 할 원산지 증명서류

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 제31조 또는 「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8조 등에 따라 발급받은 원산지 등이 기재된 영수증(간이영수증 포함)이나 거래명세서 등을 매입일로부터 **6개월간** 비치·보관해야함

- **대상품목** 쇠고기, 돼지고기, 닭고기, 오리고기, 양고기, 염소(유산양 포함)고기

# 2

## 대상품목별 원산지 표시방법

### 축산물 [소, 돼지, 닭, 오리, 양, 염소(유산양 포함)]

식육·포장육·식육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·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

- 조리에는 날 것 상태로 조리하는 것을 포함하며, 판매·제공에는 배달을 통한 판매·제공도 포함
- 국내산 쇠고기를 사용하는 경우 식육의 종류(한우, 육우, 젓소)를 함께 표시
- 다만, 식육가공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식육의 종류 표시 생략 가능

### 배추김치

배추김치를 조리하여 판매·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배추와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**각각** 표시

- 배추김치 가공품, 겉절이, 보쌈김치, 백김치 등도 원산지 표시대상임 (봄동, 얼갈이배추로 만든 배추김치 포함)
- 얼갈이배추가 소량 사용된 열무김치는 배추김치로 정의할 수 없으므로 **원산지 표시대상 아님**

### 쌀

**밥·죽·누룽지**로 조리하여 판매·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만 원산지 표시

- 쌀 가공품을 포함하며, 쌀에는 찹쌀, 흑미, 현미 및 찌쌀 포함
- 떡볶이, 떡국 등에 사용된 쌀은 **원산지 표시대상 아님**



밥



죽



누룽지

### 콩

**두부류(가공두부, 유바는 제외)·콩국수·콩비지**로 조리하여 판매·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만 원산지 표시

- 콩 가공품 포함



두부



콩국수



콩비지

# 3

## 음식점에서 가공품을 사용하는 경우

### 음식점에서 식재료로 사용하는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방법

식육가공품 · 배추김치 · 쌀 · 콩 가공품에 사용된 주원료 중 음식점의 농산물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 **9가지**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함

- **주원료** 해당 개별식품을 다른 식품과 구별, 특정 짓게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원료

#### 식육가공품이란?

「식품위생법」 제7조에 따른 「식품의 기준 및 규격」에서 정의한 **햄류, 소시지류, 베이컨류, 건조저장육류, 양념육류(양념육, 분쇄가공육제품, 갈비가공품, 천연케이싱), 식육추출가공품, 식육함유가공품**

#### 식육가공품 사용시

주원료로서 배합비율이 높은 3순위 내의 원료\* 중 **식육**의 원산지를 표시

- \* 「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조제2항제1호
- **수입완제품**을 사용한 경우 그 포장재에 적힌 원산지를 표시[예시: 소세지야채볶음(소세지: 미국산)]

#### 쌀 · 콩 · 배추김치 가공품 사용시

주원료로서 배합비율이 높은 3순위 내의 원료\* 중 **쌀 · 콩 · 배추김치(배추와 고춧가루)**의 원산지를 표시

- \* 「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조제2항제1호
- 다만, 배추김치를 제외하고 가공품에 사용된 원재료(쌀, 콩)가 **복합원재료인 경우 원산지 표시 생략 가능**
- **수입완제품**을 사용한 경우 그 포장재에 적힌 원산지를 표시[예시: 김치찌개(배추김치: 중국산)]

#### 예시

김치만두(식품유형: **만두류**):  
**밀가루** 30%(밀: 미국산),  
**배추김치** 25%, [배추(국산), 고춧가루(중국산)],  
**돼지고기** 25%(국내산),  
 마늘 10%, 양파 5%, 고추장 5%

#### 원산지 표시

**식품의 유형:** 만두류(식육가공품 아님)  
**주원료:** 밀가루, 배추김치, 돼지고기  
**음식점 원산지 표시:**  
 김치만두[배추김치(배추: 국내산, 고춧가루: 중국산)]  
 · 식육가공품이 아니므로 돼지고기는 원산지 표시대상이 아님

#### 알아 두기

### 음식점에서 가공품(빵, 과자, 아이스크림류)을 진열하여 판매하는 경우

음식점에서 빵류, 과자류, 아이스크림류를 진열 · 판매하거나 완제품을 직접 판매할 경우에는 가공품 원산지 표시 규정에 따라 원산지 표시

- 완제품을 판매할 경우 포장재에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으면 추가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됨

# 4

## 상황별 원산지 표시방법

### 모든 메뉴에 들어가는 원료의 원산지가 동일한 경우

원산지 표시는 음식명 바로 옆이나 밑에 원산지 표시대상과 함께 표시해야 하며, **일괄표시 가능**

예시

#### 꽃이네 메뉴판

삼겹살(돼지고기: 국내산)    목살(돼지고기: 칠레산)  
공기밥, 누룽지                고추장찌개, 된장찌개  
우리 업소에서는 국내산 쌀과 중국산 콩(두부)만을 사용합니다.

#### 맛나 돈가스집

카레돈가스                김치돈가스(배추김치: 중국산)  
수제돈가스                공기밥  
우리 업소에서는 국내산 쌀과 국내산 돼지고기만을 사용합니다.

###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목을 혼합 사용할 경우

섞음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표시하되 **'섞음' 표시를 해야함**

**국내산(국산)의 섞음 비율이 외국산보다 높은 경우(국내산>외국산)**

- 불고기(쇠고기: 국내산 한우와 호주산 섞음), 닭갈비(닭고기: 국내산과 중국산 섞음)

###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을 혼합 사용할 경우

쇠고기, 돼지고기, 닭고기 등을 섞은 경우 각각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함. 이때 **'섞음' 표시는 하지 않음**

- 쇠고기 야채죽(쇠고기: 미국산, 쌀: 국내산)    • 햄버그스테이크(쇠고기: 국내산 육우, 돼지고기: 미국산)

### 조리음식에 사용한 원료의 원산지가 변경되는 경우

음식 원료 원산지가 바뀔 때마다 해당 원산지를 정확하게 표시해야 함

예시

#### 짱이네 메뉴판

닭갈비(닭고기: 국내산과 중국산을 섞음)  
배추김치(배추: 국내산, 고춧가루: 중국산)



#### 짱이네 메뉴판

닭갈비(닭고기: 국내산과 **미국산**을 섞음)  
배추김치(배추: **중국산**, 고춧가루: **국내산**)

### 원산지를 '외국산'이라고 표시할 수 있는 경우

조리한 음식에 사용된 농산물 가공품의 원료 원산지가 자주 변경되어 **'외국산(A·B·C국 등)'** 또는 **'외국산'**으로 표시되어 있다면 음식점에서는 국가명을 생략하고 **'외국산'**이라고 표시 가능

피자[햄(돼지고기: **외국산**)], 된장찌개[두부(콩: **외국산**)]

※ 다만, **가공품이 아니라면** 원산지가 자주 변경되어도 '외국산'으로 표시 불가능

# 5

## 매장에서의 표시방법

공통 사항	
표시위치	음식명 바로 옆이나 밑에 표시대상 원료인 농산물명과 원산지 표시
글자크기	메뉴판 또는 게시판 등에 적힌 음식명 글자크기와 같거나 크게 표시

음식점 형태	표시방법	
<b>㉠</b> 일반음식점, 휴게음식점	<b>기본</b> 업소 내의 모든 메뉴판 및 게시판 <b>추가</b> 취식장소가 벽, 칸막이 등으로 구분된 경우 취식장소별로 원산지 표시	
위탁급식소 집단급식소	<b>㉡</b> 일반	<b>기본</b> 월간 메뉴표, 메뉴판, 게시판, 풋말 등을 사용하여 소비자가 원산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
	<b>㉢</b> 교육·보육시설 등 미성년자 대상 영업	<b>기본</b> 월간 메뉴표, 메뉴판, 게시판, 풋말 등을 사용하여 소비자가 원산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 <b>추가</b> 원산지가 적힌 주간 또는 월간 메뉴표를 작성하여 가정통신문이나 교육·보육시설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추가 공개
	<b>㉣</b> 장례식장, 예식장, 병원 등에서 영업	<b>기본</b> ㉠ 또는 ㉡ 또는 ㉢



### 원산지 표시판

원산지 표시판을 기준에 맞게 제작·부착하면 게시판과 메뉴판에 원산지 표시 생략 가능

표시판 제목	“원산지 표시판”
표시판 크기	가로 X 세로(또는 세로 X 가로) 29cm X 42cm이상
글자크기	60포인트 이상 (※ 음식명은 30포인트 이상)
글자색	바탕색과 다른색으로 선명하게 표시
부착위치	<b>기본</b> 업소 내에 부착되어 있는 가장 큰 게시판의 옆 또는 아래에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도록 부착 ※ 게시판 크기가 모두 같을 경우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게시판 1곳 게시판이 없을 때 주 출입구 입장 후 정면에서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



# 6

## 통신판매 시 원산지 표시방법

### 통신판매의 정위와 범위

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통신판매 중 같은 법에 따라 신고한 통신판매업자의 판매 또는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이용한 판매

### 통신판매 시 원산지 표시방법

공통 사항	
표시문자	한글로 표시하되 필요한 경우 한글 옆에 한문 또는 영문 등으로 추가 표시 가능
글자 위치·크기·색깔	소비자가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표시 ※ 글자로 표시할 수 없는 경우(라디오 등) 1회당 원산지를 두 번 이상 말로 표시

통신매체별 표시방법		
구분	전자매체 이용(인터넷, 배달앱, TV등)	인쇄매체 이용(신문, 잡지 등)
표시위치	<b>1 원칙</b>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위에 표시 <b>2 허용</b>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위에 원산지 표시위치를 표시하고 매체의 특성에 따라 자막 또는 별도의 창을 이용하여 원산지 표시	<b>1 원칙</b>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위에 표시 <b>2 허용</b>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위에 원산지 표시위치를 명시하고 그 장소에 표시
표시시기	대상 제품이 화면에 표시되는 시점부터 표시	-
글자크기	제품명 또는 가격표시와 같거나 그보다 크게 ※ 별도의 창을 이용하는 경우 「전자상거래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」에 따라 표시 가능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위치·글자 크기 등을 선택하여 명확하게 제공	<b>1 원칙</b>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글자 크기의 1/20이상 <b>2 허용</b> 광고면적 기준 8~20포인트 이상 ※ 농산물 포장재 원산지 표시방법 준용
글자색	제품명 또는 가격표시와 같은 색	

배달을 통해 소비자에게 음식이 전달되는 경우	
표시방법	<b>원칙</b> 표시대상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원료(음식점 대상품목 24개)의 원산지를 <b>포장재에 표시</b> <b>허용</b>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, 전단지, 스티커 또는 영수증 등에 표시 가능

# 7

## 표시방법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

### 원산지 거짓표시에 대한 처분 기준

#### 형사처분

**형사처분**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

**상습위반자**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5천만원 이하

- 원산지 거짓표시로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거짓표시로 적발된 경우

#### 과징금

**과징금** 위반금액의 5배 이하(최고 3억원 이하)의 과징금

※ 2년 이내 2회 이상 원산지 표시기준(거짓표시 등)을 위반하는 경우

#### 위반업체 공표

**농식품부, 농관원 홈페이지 등에 공표**(영업소 명칭, 주소, 위반내용 등)

#### 원산지 위반자 의무교육

**원산지 위반자 의무교육**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이수

- 교육 이수명령을 통지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

### 원산지 미표시에 대한 처분 기준

구분	과태료금액	(단위: 만원)		
	위반행위	1차	2차	3차
과태료	쇠고기 원산지 미표시	100	200	300
	쇠고기 식육 종류 미표시	30	60	100
	돼지, 닭, 오리, 양, 염소(유산양 포함)고기, 쌀, 배추김치(배추, 고춧가루), 콩 미표시	품목별 30	품목별 60	품목별 100
	수산물 표시대상 15품목 미표시	품목별 30	품목별 60	품목별 100
	살아있는 수산물 미표시	5~1,000 이하		
	표시방법 위반	미표시 과태료 금액의 1/2(5~1,000 이하)		
	영수증 등을 비치·보관하지 않은 경우 (『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』 제8조와 관련)	20	40	80
<b>위반업체 공표</b>	미표시 2년 이내 2회 이상 위반 시 공표(공표 내용은 거짓표시와 동일)			
<b>원산지 위반자 의무교육</b>	미표시 2년 이내 2회 이상 위반 시, 교육 이수명령 통지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이수 ※ 교육 미이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			